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변경전 :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변경후 :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변경내용

1)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변경

2) 펀드명 변경

3.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펀드명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제2조 (용어의 정의)	(신설)	8. "모자형"이라 함은 다른 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3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신설)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으로 한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6. 모자형 (자투자신탁)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⑤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내지 제4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모투자신탁을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제1항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신설 반영 제3항 및 제4항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2.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제3항 및 제4항 삭제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용 변경	1. 제3조제4항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 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상으로 한다. 2.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제19조 (운용 및 투자 제한)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용 변경	본문 및 제1호 (현행과 동일) 제2호 ~ 제7호 삭제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투자신탁에 기재 반영하고 자투자신탁 내역 삭제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 제4항 삭제
제25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

		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환매연기)	①(생략)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생략)	①(생략, 현행과 동일)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 및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생략, 현행과 동일)
제30조 (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제35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②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수익자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수익자 총회)	제 9 항 (신설)	⑪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50조 (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생략)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 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현행과 동일)

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 C-P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마. 특수형태 - 모자형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10일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펀드명 변경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다. 모자형 구조 (신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신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혼합채권형) 투자신탁,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모자형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모집합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별첨1)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 합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신설) (신설) 현행 투자신탁 사항을 모집합투자기구에 기재 반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별첨 2) 나. 모집합투자기구 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table>
<tr>
<td></td>
<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 합니다.</td>
<td>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 합니다.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90% 이상</td></tr>
</table>
※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 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td>
</tr>
</table>

	나. 위험관리 ■ 금리변동위험 관리방안 • Top-down 및 Bottom-up 을 병행한 리서치 활동 • 금리 방향성에 의존한 잦은 듀레이션(Duration) 대응 최소화 ■ 신용위험 관리방안 • 산업별/발행기업별 분산투자로 신용위험 최소화 •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전문인력(Credit Analyst)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전자단기사채를 포함한 채권 및 우량 어음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제목 신설) 현행 투자신탁 내용을 반영	**나. 위험관리** 조직적 리스크관리 : Risk Control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전자단기사채를 포함한 채권 및 우량 어음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성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 투자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완전하게 열거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투자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추가) 나. 환매 (추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등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1.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생략)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생략, 현행과 동일)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생략, 현행과 동일)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이 발생한 경우(생략, 현행과 동일)

[간이투자설명서]

<table>
<tr><th>구 분</th><th>변 경 전</th><th>변 경 후</th></tr>
<tr><td>펀드명</td><td>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투자신탁[채권]</td><td>하나UBS파워e단기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td></tr>
<tr><td>I.
집합투자
기구의
개요</td><td>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 합니다.

분류
(신설)</td><td>집합투자기구의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 합니다.

분류
모자형</td></tr>
<tr><td rowspan="2">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 합니다.</td><td>[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 합니다.</td></tr>
<tr><td>2. 투자전략
가. 투자대상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채권</td><td>60% 이상</td></tr><tr><td>어음</td><td>40% 이하</td></tr><tr><td>자산유동화증권</td><td>40% 이하</td></tr></table></td><td>2. 투자전략
가. 투자대상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td><td>90% 이상</td></tr><tr><td>유동성자산</td><td>10% 이하</td></tr></table></td></tr>
</table>

	나. 투자전략 <신설>	나. 투자전략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및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제목신설> 1) 기본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전자단기사채 포함)에 투자하며, 신탁재산의 40%이하를 어음에 투자합니다. - 자산 편입시 만기 매칭 전략을 사용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최소화 추구 - 우량 회사채를 선별하여 투자 - 신용등급 AAA 급 은행의 정기예금을 편입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2) 자산 배분 및 종목 선정 - 자산 조달의 안정성 및 편입 자산의 금리 변동, 유동성 리스크의 관리 편입자산의 대부분을 3 개월 전후에 맞추어 운용하여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 추구 - Top-down 및 Bottom-up 전략을 병행하여 투자대상 채권 및 기업어음 선정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1) 기본 운용전략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채권(전자단기사채 포함)에 투자하며, 신탁재산의 40%이하를 어음에 투자합니다. - 자산 편입시 만기 매칭 전략을 사용하여 금리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 노출 최소화 추구 - 우량 회사채를 선별하여 투자 - 신용등급 AAA 급 은행의 정기예금을 편입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2) 자산 배분 및 종목 선정 - 자산 조달의 안정성 및 편입 자산의 금리 변동, 유동성 리스크의 관리 편입자산의 대부분을 3 개월 전후에 맞추어 운용하여 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수익 추구 - Top-down 및 Bottom-up 전략을 병행하여 투자대상 채권 및 기업어음 선정
	3. 운용전문인력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3. 위험관리 <제목 신설> (생략)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3.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생략, 현행과 동일)

(별첨 1)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파워 e 단기 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주요투자대상	채권 60% 이상, 어음 40% 이하
	투자목적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국내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고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

(별첨 2)

가. 자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하나 UBS 파워 e 단기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90% 이상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자산	10%이하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30% 이내)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기타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모투자신탁 및 유동성자산에 대한 투자한도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

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단기대출 및 환매 조건부 매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법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수익자총회의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위 투자자산부분에서 금융기관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First Class연금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3.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10일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1. 재무정보**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차이나대표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3.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표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10일 - 설정 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산정 기준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주석 추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중국주식에 투자하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있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별첨 참조>	[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8.38% 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별첨 참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투자위험등급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합성총보수.비용은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를 연 1.0%로 추정하여 포함한 수치이며 실제 보수.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수** (업데이트) 합성총보수·비용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비용을 포함하는 지급비율로서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1.00%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중국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고 있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8.38%임에 따라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별첨>

[변경 전]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 최직근 결산일 기준 설정된 후 3년이 미경과한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UBS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 또는 판매회사의 위험등급분류기준과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 "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합니다.

6) 모자형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위험등급을 기초로 각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고려하여 자펀드

의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다른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 형태의 펀드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펀드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8) 최대손실률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제외한 것으로서, 사전에 계획된 수익구조상 발생 가능한 손실률을 말합니다. 다만, 당사가 추정 또는 예상한 최대손실률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높은 레버리지효과 및 상품구조의 복합성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됩니다.

[변경 후]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 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 초과	25% 이하	15% 이하	10% 이하	5% 이하	0.5% 이하

주1) 위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3.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표지	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03월 10일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9.45%임에 따라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0.27%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표지	투자 위험 등급 : 4등급(보통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 위험 등급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생략)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9.45%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 [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0.27% 임에 따라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다소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